


# I. 수정보고서 재검토 평가요약문

(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)

구 분	주요 내용
사업개요	<p>1. 사업명 :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</p> <p>2. 사업지 위치 : 인천시 서구 석남동 ~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</p> <p>3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장</p> <p>4. 주요내용 : 노선연장 L=10.74km, 정거장 6개소</p> 
지역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천광역시의 인구수 추이는 2017년 기준 301만인으로 과거 5년간 연평균 0.65%의 증가추이를 보임</li> <li>· 인천시의 총 수단통행량(도보 및 기타, 일반철도·KTX 제외)은 222만통행/일로 조사되었으며, 10개 구군중 남동구가 83만통행/일로 가장 많으며, 본 사업 노선이 위치한 서구가 74만통행/일임</li> <li>· 인천시 지하철 및 버스+지하철 분담률은 13.8%이며, 부평구가 19.6%로 가장 높고, 중구와 연수구가 10.7% 가장 낮으며, 본 사업노선이 위치한 서구는 11.1%임</li> </ul>
대안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점부 석남연장선 회차선과 경합해소를 위한 대안노선 검토</li> <li>· 가정지구 학교용지 저축 최소화를 위한 대안노선 검토</li> <li>· 청라시티타워 컨셉과 부합하고, 관계기관과의 최적 협의결과를 반영한 대안 노선 검토</li> <li>· 종점부 하나금융타운 부지 저축 최소화를 위한 대안노선 검토</li> </ul>
대안별 타당성 평가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제성 분석 결과, B/C는 1.11, NPV 1,439억원 IRR 5.36%로 분석되어 사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</li> <li>· 재무성 분석 결과, 국고지원 0%로 전액 인천광역시가 2부담, 현재 요금수준 1,250원으로 불변가격 가정 시, 수익성 지수(PI)는 0.15fh 수익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 되었음</li> </ul>
결 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본 사업은 청라국제도시에 도시철도를 연결하여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하고, 외국인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</li> <li>· 경제성 분석결과, B/C가 1.11, NPV 1,439억원, IRR 5.36%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</li> </ul>

## Ⅱ. 수정보고서 재검토 세부내역

(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)

구 분	세부검토의견	조치 결과	비고
교통수요 예 측	○ 가공 전 국가교통DB와 최종 산정된 국가 교통DB의 발생량 및 수단분담 등을 비교·분석하여 제시하기 바람	○ 가공 전 국가교통DB와 본 과업에서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사업 유발통행량 반영에 따른 지역별 통행발생 증감량 및 수단분담 변화를 제시 하였음	반영 p.4-25 p.4-29
	○ 추가 개발계획(청라국제도시)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	○ 추가 개발계획(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사업) 유발통행량의 통행분포방법을 제시하였음	반영 p.4-13
비용산정	○ 비용산정을 위한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기 바람 (본선 공사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가, 정거장 공사비는 GTX-A 연신내 정거장 단가, 환승통로는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예타 단가, 신호 공사비는 KDI 지침 단가, 종합사령실 보완 공사비는 도봉상-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단가 등 사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)	○ 비용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을 제시 하였으며, KDI지침 단가가 없는 항목에 대한 유사사업 사례 단가 적용 사유를 제시하였음	반영 p.6-5~15
편익규모	○ 편익 규모의 적정성 판단(유사사업 비교) 결과를 수록하기 바람	○ 본 사업과 유사한 철도 연장사업에 대한 수요와 편익을 검토하였으며, 인당편익 분석을 통해 본 사업노선의 편익규모 적정성을 제시하였음	반영 p.5-12
부 록	○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“타당성 평가대행자” 로 등록 시 지정한 교통, 비용 및 재무 분야의 기술인력이 모두 참여하여야 하나, 본 평가서 참여자 명단에는 재무 분야의 기술인력만 참여 기술자로 명시되어 있음	○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이 참여기술자에 포함되었음	반영 p.11-1~3
	○ 부록에 첨부되어야 할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, 홈페이지 공개문, 평가 대행비용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추가하기 바람	○ 부록서류에 관련사항을 추가하였음	반영 p.11-31~34

